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업범위에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교류·협력 추가 등〉
■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939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사업범위에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교류·협력’ 등 추가	2
2. 조합의 타 법인 출자 근거 마련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용혜인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5. 11. 6.
3. 회 부 일 : 2025. 1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협동조합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 간 협동을 도모하여 사회연대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같은 법에 따른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등이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출자를 할 수 없는 등 입법미비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

또한 본 법 시행령을 근거로 지역사회 개발사업과 사회연대경제와의 교류·협력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관련 사업의 안정성과 확장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사회연대경제 조직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추가하고, 조합이 타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39조1항 및 4항, 제78조제1항 등).

Ⅲ. 검토의견

1. 사업범위에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교류·협력’ 등 추가

- 개정안은 ①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교류·협력사업 등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안 제39조제1항), ②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의무 주체에 조합을 포함하며, 그 협력 대상에 외국의 협동조합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① 중앙회는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간의 상호협력, 이익증진,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① 조합과 중앙회는----- -----및 외국의 협동조합 간의 ----- -----.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신설> <신설>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① ----- ----- ----- 7. 지역사회 개발사업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교류·협력사업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

현행	개정안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에 부대하는 사업 <u><신 설></u>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① 중앙회	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 중(異種)협동조합연합회 다.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바. 「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5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 하여 지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 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법」 제16조의10에 따른 소셜벤처기업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9. -----제8호까지의----- ----- 10. 그 밖에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① -----

현행	개정안
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7. (생략) <신설> <신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 에 부대하는 사업	----- -----. 1. ~ 7. (현행과 같음) 8.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복지사업 9. 제39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연대경제조 직 등에 대한 교류·협력사업 10. -----제9호까지의----- -----

□ 현행법에 따르면 ‘조합’은 공동유대(각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를 바탕으로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중앙회’는
이들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임.¹⁾

<2024년도 신용협동조합 현황²⁾>

조합수	조합원수	총 자산	총 부채	총 자본
866개	669만9천명	152조8,361억원	142조7,227억원	10조1,134억원

1) 「신용협동조합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
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란 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2) 신협중앙회, 「2024 신협 통계」, p.12-13

□ 현행법 제5조³⁾는 ‘중앙회’가 협동조합 간의 상호협력, 이익증진,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행법 제78조에 따른 중앙회의 사업범위에는 다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조합’의 경우에는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의무 주체에서 배제되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의무 주체에 조합을 포함하고, 그 협력 대상에 외국의 협동조합을 추가함으로써 국내·외 협동조합 간 협력사업⁴⁾을 강화하고,

조합의 사업범위에 ‘지역사회 개발사업’,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교류·협력사업’,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금융위 승인을 받은 사업’을 추가하는 한편, 중앙회의 사업범위에도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복지사업’, ‘사회연대경제조직 등에 대한 교류·협력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협력사업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성장 등에 기여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협동조합 간 협력의무) 개정안 중 협동조합 간 협력의무의 주체에 조합을 포함하고 그 협력 대상에 외국의 협동조합을 추가하는 안의 경우,

3) 「신용협동조합법」 제5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① 중앙회는 조합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간의 상호협력, 이익증진,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국제협동조합연맹 7원칙 중 제6원칙 “협동조합간의 협동”: 국내·외 협동조합간 협력사업을 통해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하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4⁵⁾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을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회원 자격이 있는 자로 이미 규정하고 있고,

다른 상호금융기관 관련 입법례에서도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상호금융기관의 협동조합 간 협력의무 관련 입법례>

구분	입법례
농협	「 <u>농업협동조합법</u>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 중앙회,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이하 “농협경제지주회사”라 한다) 및 그 자회사는 다른 조합,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u>외국의 협동조합</u> 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수협	「 <u>수산업협동조합법</u> 」제10조(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과 중앙회는 조합등 간, 조합등과 중앙회 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u>외국의 협동조합</u> 과의 상호협력·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산림조합	「 <u>산림조합법</u> 」제10조(다른 조합 등과의 협력) 조합등과 중앙회는 다른 조합,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u>외국의 협동조합</u> 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새마을금고	「 <u>새마을금고법</u> 」제4조(다른 협동조합과의 협력) 금고와 중앙회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u>외국의 협동조합</u> 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다음 각 호의 조합으로 한다.

1.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②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내용 추가)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내용 추가에 대하여는 아래 사항에 대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범위>

조합(법 제39조제1항)	중앙회(법 제78조제1항)
-	조합에 대한 검사·감독,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조정·조사연구 및 홍보, <u>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u>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육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
신용사업	신용사업
<u>복지사업</u> (사회복지, 문화후생, <u>지역사회개발</u>)	-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조합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위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위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개정안(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내용 추가)	
지역사회 개발사업, 사회연대경제와의 교류·협력사업, 금융위 승인을 받은 사업	복지사업, 사회연대경제와의 교류·협력사업

- 첫째, 개정안은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교류·협력사업’을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내용에 추가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 운영 시에 이미 다양한 단체와 교류·협력이 가능하며,

개정안과 같이 교류·협력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만 특정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경제·사회·문화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상호금융기관 관련 입법례에서도 ‘사회연대경제조직’만을 특정하지 않고 다양한 경제·사회·문화 단체와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상호금융기관 사업내용 중 다른 단체와의 협력 관련 입법례>

구분	입법례
농협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사업) ① 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6. <u>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u>
수협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사업) ① 지구별수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9. <u>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u> 10. 다른 조합·중앙회 또는 <u>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공동사업 및 업무의 대리</u>
산림조합	「산림조합법」 제46조(사업) ① 지역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다. 8. <u>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u>
새마을금고 ⁶⁾	관련 내용 없음

6) 「새마을금고법」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신용사업 (이하 생략)
2. 문화 복지 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개발사업
5.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6. 중앙회 또는 다른 금고가 위탁하는 사업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금고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의료지원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10.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둘째, 개정안은 ‘지역사회 개발사업’을 조합의 사업내용에 추가하고 있는데,

현행 법령⁷⁾상 복지사업 중 일부로 지역사회 개발사업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 법률로 따로 규정할 것인지 논의할 필요성이 있고,

해당 사업을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현행 법령에 따라 복지사업 운영재원의 한도는 조합의 자기자본 또는 자산의 10% 중 적은 금액으로 한정되고, 조합은 단순한 협동조합이 아니라 예금 취급을 주된 업무로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해당 사업의 운영 범위 및 투자 한도 등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셋째, 개정안은 중앙회가 ‘복지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추가하고 있는데,

7)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② 제1항제2호의 복지사업의 범위 및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 어린이집,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2. 문화후생사업: 다음 각목의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가. 주부대학 및 취미교실 등 사회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나. 탁구장·테니스장 및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다. 예식장·독서실·식당 및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라. 장학사업

3. 지역사회개발사업: 공동구매·판매사업, 창고업 및 장의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③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다만, 결손금발생등으로 자기자본이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미만으로 감소된 때에는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의 100분의 10

현행법 제61조⁸⁾ 및 제78조제1항⁹⁾에 따라 조합에 대한 지도, 검사·감독, 조합 사업에 대한 지원 등을 중앙회의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업내용에 ‘복지사업’을 추가할 경우 중앙회 설치의 본래 목적이 퇴색될 수 있고, 현행법 제78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의 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금융위원회는 개정안 중 조합 및 중앙회의 사업종류와 관련해, 조합은 ‘예금·대출취급기관’으로서의 건전성 유지와 금융소비자보호 책임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업 범위 확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러한 측면에서, ‘그 밖에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금

8) 「신용협동조합법」 제61조(설립) ① 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그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중앙회를 둔다.

9)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① 중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의 사업에 관한 지도·조정·조사연구 및 홍보
2. 조합원 및 조합의 임직원을 위한 교육사업
3. 조합에 대한 검사·감독
4.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5. 신용사업
 - 가. 조합으로부터 예치된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등의 운용
 - 나. 조합에 대한 자금의 대출
 - 다.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내국환 및 외국환 업무
 - 라. 국가·공공단체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 마. 조합에 대한 지급보증 및 어음할인
 - 바. 「자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제증권 및 지방채증권의 인수·매출
 - 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
 - 아.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
6. 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공제사업
7.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9.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은 사업 범위에 추가하더라도, 여타 신설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 조문으로 포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함.

조합 사업(안 제39조제1항)	중앙회 사업(안 제78조제1항)
① 지역사회 개발사업: 현행 법령에 따라 사업 가능(신중검토 ¹⁰⁾) ②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교류·협력사업: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신중검토 ¹¹⁾) ③ 조합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수용	① 조합·조합원을 위한 복지사업: 중앙회장이 조합장 투표로 선출되는 구조를 고려할 때, 중앙회의 복지사업이 선심성 예산집행으로 변질될 가능성(신중검토 ¹²⁾) ② 사회연대경제조직과의 교류·협력사업: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신중검토)

10)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경우, 지역사회 개발에 대한 신탁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조합원 및 예금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현행 「신탁법 시행령」 제16조에서와 같이 부대사업 또는 복지사업의 하위 항목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11) 조합과 중앙회의 ‘사회연대 경제조직과의 교류·협력’의 경우, 현행 법령상으로도 조합원(중앙회의 경우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히 사회연대 경제조직과의 광범위한 교류·협력이 가능하고, 특정 경제주체와의 교류·협력을 사업의 종류에 명시할 경우, 유사한 공익적·지역기반 활동을 수행하는 여타 경제주체와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임.

12) 중앙회는 현행 「신탁법」 제78조제1항제4호의 “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근거로 조합의 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앙회의 직접 사업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임.

2. 조합의 타 법인 출자 근거 마련

□ 개정안은 ① 조합이 총회 결의를 거쳐 자기자본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게 하고(안 제39조제4항 신설), ② 감사의 직무 범위에 출자한 자회사에 대한 조사권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37조(감사의 임무) ① ~ ③ (생략) ④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391조의2, 제402조, 제412조의2, <u>제413조</u> 및 제413 조의2를 준용한다.	제37조(감사의 임무)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 ----- -----, <u>제412조의5</u> , <u>제413조</u> ----- -----.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u><신설></u>	제39조(사업의 종류 등) ④ 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결 의를 거쳐 자기자본의 범위 내 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 「협동조합 기본법」은 협동조합 간 협동을 도모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 등이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1좌 이상을 출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³⁾

□ 그런데,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중앙회가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지만¹⁴⁾, 조합의 경우에는 타 법인 출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현재 조합들은 다른 법인을 지원하려는 경우 원리금 상환을 전제로 한 대출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임.

□ 개정안은 조합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¹⁵⁾ 범위에서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연대경제조직

13) 「협동조합 기본법」 제115조의4(회원의 자격)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회원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다음 각 호의 조합으로 한다.

1. 이 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② 이종협동조합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5조의5(준용규정) ① 이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의 가입, 출자 및 책임, 제명 등에 관하여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생략)

제22조(출자 및 책임) ①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을 출자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4) 「신용협동조합법」 제78조(사업의 종류 등) ③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⑤ 중앙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차입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출자(출자 목적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자기자본”이란 자본금, 적립금, 그 밖의 잉여금 등의 합계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조의2(자기자본)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신용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자본금·적립금 기타 잉여금등의 합계액에 결산상의 오류에 의한 금액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등에 대해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보임.

-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사례를 보면, 일정 범위에서 타 법인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규제 형평성을 고려할 때 타 법인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임.

<상호금융기관의 타 법인 출자한도>

구분	신협법 개정안	농협·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총 출자한도	자기자본 이내	자기자본 이내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50%이내
동일 법인 출자한도	자기자본의 20%이내	자기자본의 20%이내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20%이내

- 다만, 개정안은 총 출자한도를 농협·수협·산림조합과 동일하게 자기자본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¹⁶⁾의 경우에는 타 법인 출자한도를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50% 이내로 한정하고 있고,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경우에도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출자할 수 있게 하는 등 자산건전성 측면의 고려를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임.

16) 「새마을금고법」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2. 문화 복지 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개발사업
8. 의료지원사업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사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⑥ 금고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2항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는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 개정안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타 법인 출자 허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조합의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출자 시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출자 가능 사업 범위 및 한도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 한편, 개정안은 감사의 직무 범위¹⁷⁾에 「상법」 제412조의5¹⁸⁾에 따른 자회사 조사권을 추가하고 있는데, 출자한 법인에 대한 적절한 감시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보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문 의 처

02)6788-5113

- 17) 「상법」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①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402조(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 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제413조(조사·보고의 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 제413조의2(감사록의 작성) ①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18) 「상법」 제412조의5(자회사의 조사권) ①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모회사의 감사는 제1항의 경우에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③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